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고시개정 안내

ACT INFORMATION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14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18조제6항·제20조제4항·제27조의5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26일
산업자원부장관

- 고시번호 :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6-107호
- 공포일자 : 2006. 10. 26
- 전문참고 : 한국전력기술인협회(<http://www.keea.or.kr> → 자료실 → 고시 및 공고)

◎ **개정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자체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와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공사에 대하여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감리원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전력기술인 등의 경력 인정시 전력기술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아니하였으나 일정학점 이상의 전력기술관련학과목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하도록 하는 한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8호)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주감리원의 의무배치 면제 및 직접인건비 현실화(제25조제3항·제4항 및 제33조)

- 부실방지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하여 감리원이 부족한 교육청 등 공공기관 및 전문감리업체에서 어려움을 호소
- 공사기간동안 상주감리원 1인으로 배치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보조감리원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와 별표 2에 따라 공사기간동안 상주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는 경우 및 소규모 건축물공사에 대하여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전력시설물공사와 공사기간동안 상주배치를 요하는 공동주택 등의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비상주감리원의 직접인건비 비율을 현실화 함
- 공사기간동안 상주감리원 1인으로 배치가 충족되는 경우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자체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각각 보조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주자 및 감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나. 기술사 배치에 따른 등급을 책임감리원으로 명확화(제25 조제9항)

-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전기설비용량 80만 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공사 등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기술사의 감리원 등급을 명확히 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
- 기술사는 책임감리원임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사중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기술사의 의무배치를 면제함
- 기술사의 질적 수준향상을 통하여 공사감리업무의 수행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다. 전력기술관련학과 인정범위 확대(제37 조제2항)

- 전기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등 전력기술관련학과 졸업자만을 영 별표 1 및 별표2의 학력·경력자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으로 인정하여 학과명이 변경되거나 전력기술관련학과에 준하는 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상으로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경력심사위원회가 정한 전력기술관련학과목을 전체 이수학점의 30%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저변이 확대됨은 물론, 발굴·육성을 통해 전력기술의 진흥·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라. 감리원 배치인원의 상한제 도입(별표 2 비고제8호)

- 현재, 별표 2의2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는 보조감리원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 감리업자와 발주자는 보조감리원 배치인원수를 협의하여 조정하고 있는데 반해, 별표 2를 적용하는 공동주택 등 이외의 전력시설물공사는 그러하지 않음
- 별표 2에 따라 총공사기간 동안 배치할 상주감리원이 5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 2의2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감리업자와 발주자는 감리원수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전기사업자가 발주하는 송전선로공사 등은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외규정을 둠
- 공동주택 등 이외의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도 과도한 감리원 배치를 예방할 수 있어 발주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개정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p>산업자원부고시 제2006 - 68호</p> <p>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14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18조제6항·제20조제4항·제27조의5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6년 7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p> <p style="text-align: center;">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p> <p>제9조(공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청된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p> <p>제25조(감리원배치기준)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 등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별표 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수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의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당초 배치계획을 변경하여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자의 확인을 얻어 배치계획상의 감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 및 자격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등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별표 2의2의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공사기간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자등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써 당해 공사 전체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④ 비상주감리원의 직접인건비 비율은 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2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p> <p><신 설></p> <p>⑤ 내지 ⑦ (생 략) ⑧ 영 별표 3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안전 기술사를 포함한다.</p>	<p>산업자원부고시 제2006 - 107호</p> <p>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14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18조제6항·제20조제4항·제27조의5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6년 10월 26일 산업자원부장관</p> <p style="text-align: center;">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p> <p>제9조(공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① -----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4. (현행과 같음)</p> <p>제25조(감리원배치기준) ① ----- 배치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p> <p>② ----- 제1항의 -----</p> <p>③ ----- 상주감리원 -----</p> <p>----- .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제1항 별표 2의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상주 배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비상주감리원의 직접인건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⑤ 감리업자등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감리원의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배치계획을 변경하여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자의 확인을 얻어 배치계획상의 감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 및 자격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 내지 ⑧ (현행 제5항 내지 제7항과 같음) ⑨ 영 별표 3 또는 제1항·제2항 ----- 영 별표 2에 따른 감리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전기안전 기술사를 포함한다)를 책임</p>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개정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p>1. ~ 3. (생략)</p> <p>제33조(감리원의 최소배치기준) ①감리업자들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압이상 변압기 또는 차단기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각각 1인 이상을 공사기간동안만 상주배치할 수 있다. ②감리업자들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공사기간동안만 감리원을 상주배치할 수 있다.</p> <p>1.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로서 전력시설물 공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초급감리원 1인 이상 2.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로서 전력시설물 공사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급감리원 1인 이상</p> <p>③(생략)</p> <p>제37조(전력기술관련학과) 영 별표1 및 별표2의 각 비고 제2호에서 말하는 전력기술관련학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4. (생략) 5. 기계·전기공학군(부) 등은 전력관련학과를 이수한 자 또는 전기전공자 (<u>신설</u>)</p> <p>제38조(학력인정범위) ①대학교졸업 학력 인정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②전문대학교(5년제 고등학교 포함)졸업 학력 인정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3년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중퇴한 자 ③(생략) 1. ~ 2. (생략) 3.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과정을 2년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중퇴한 자</p> <p>제40조(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등) ①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또는 경력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2. 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p>	<p>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중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현행과 같음)</p> <p>제33조(감리원의 최소배치기준) ①-----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중 수전용 변압기 또는 발전기----- -----책임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1인 이상을 ----- ②-----영 별표 3 및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당해 공사대상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중급감리원 1인 이상을 공사기간동안만 상주 배치할 수 있다. (<u>삭제</u>)</p> <p>(<u>삭제</u>)</p> <p>③(현행과 같음)</p> <p>제37조(전력기술관련학과) ①영----- ----- 1. ~ 4. (현행과 같음) 5. 공학군(부) 등은 전력기술관련학과를 이수한 자 또는 전력기술분야 전공자 ②전문학사학위과정 이상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제42조에 따라 경력심사위원회가 정한 전력기술관련학과목을 전체 이수학점의 30% 이상 이수한 경우 전력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p> <p>제38조(학력인정범위) ①학사학위과정 학력 ----- ----- 1. ~ 2. (현행과 같음) ②전문 학사학위과정(고등전문학교) 학력 ----- ----- 1. ~ 2. (현행과 같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 ----- ③(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 -----</p> <p>제40조(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등) ①영 제9조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또는 경력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을 신고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첨부 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1부 (1)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p>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개정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p>4.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신 설〉</p> <p>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확인서의 첨부서류인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제1호 및 제2호를 말하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라 함은 다음 제3호 및 제4호를 말한다.</p> <p>1.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산재보험확인서, 국민건강보험가입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확인서</p> <p>2. 그 밖에 근무사실 및 근무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p> <p>3. 전력기술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및 실적증명서 등)</p> <p>4.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해당자에 한한다)</p> <p>③(생 략)</p> <p>〈신 설〉</p>	<p>(2) 참여사업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p> <p>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p> <p>다.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p> <p>라. 증명사진 1매</p> <p>마.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p> <p>2. 경력변경을 신고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 첨부</p> <p>가. 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서류</p> <p>나.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p> <p>②제1항에 의한 세부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p>1.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산재재해보험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서, 그 밖에 근무사실 및 근무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부 등)를 말한다.</p> <p>〈삭 제〉</p> <p>2. “참여사업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용역계약서, 용역수행현황확인서, 자체사업계획서 등을 말한다.</p> <p>3. 그 밖에 “경력사항(변경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교육, 상훈 등의 이수확인서, 표창장 등을 말한다.</p> <p>③(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①이 요령은 공포후 최초로 계약(입찰공고를 하는 때에는 입찰공고를 말한다)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p> <p>②제25조제3항·제4항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용역대가 및 감리원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06년 7월 5일 이후부터 이 요령 시행 전일까지 계약된 용역에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p> <p>제4조(전력기술관련학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경력을 신고한 자가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p>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제25조제1항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감리원수(인×월)</p> <p style="text-align: center;">(표 생략)</p> <p>※ 비 고</p> <p>1. (생 략)</p> <p>2. (생 략)</p> <p>3. 각급 감리원수는 공사의 규모, 중요도, 복잡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감리원의 등급별, 배치인원수를 발주자와 감리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원은 위 표 감리원수의</p>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제25조제1항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감리원수(인×월)</p> <p style="text-align: center;">(표 생략)</p> <p>※ 비 고</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등급별 ----- 발주자 ----- ----- <후단 삭제></p>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개정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p>100분의 50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신 설)</p> <p>4.~6. (생 략) (신 설) (신 설)</p>	<p>3의2. 책임감리원의 배치기간은 상주감리원 배치기간의 100분의 50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감리원이 공사기간동안 상주 배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4.~6. (현행과 같음)</p> <p>7. 위 표의 감리원수(인×월)에서 1 월이라 함은 25일 말한다.</p> <p>8. 위 표에 따라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할 상주 감리원수가 5인을 초과한 때에는 5인을 초과하는 감리원수에 대하여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재부문에 대하여 감리원수를 조정하도록 한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별표 2의2]</p>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제25조제2항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규 모</th> <th>감리원 배치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가. 공동주택</td> <td>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td> <td>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td> </tr> <tr> <td>800세대이상</td> <td>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 책임감리원 :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 (생 략)</td> </tr> <tr> <td rowspan="2">나. 건축물</td> <td>연면적 10,000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0,000 제곱미터 미만</td> <td>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td> </tr> <tr> <td>연면적 30,000 제곱미터 이상</td> <td>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 책임감리원 :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 (생 략)</td> </tr> </tbody> </table> <p>※ 비 고 1. ~ 4. (생 략) 5. 위 표 감리원 배치기준에 의하여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할 보조감리원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 감리업자와 발주자는 보조감리원 배치인원수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구분	규 모	감리원 배치기준	가.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800세대이상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 책임감리원 :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 (생 략)	나. 건축물	연면적 10,000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0,000 제곱미터 미만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연면적 30,000 제곱미터 이상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 책임감리원 :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 (생 략)	<p>[별표 2의2]</p>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제25조제2항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규 모</th> <th>감리원 배치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가. 공동주택</td> <td>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td> <td>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책임감리원 1인을 포함한 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td> </tr> <tr> <td>800세대이상</td> <td>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 책임감리원 : 1인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 (현행과 같음)</td> </tr> <tr> <td rowspan="2">나. 건축물</td> <td>연면적 10,000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0,000 제곱미터 미만</td> <td>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책임감리원 1인을 포함한 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td> </tr> <tr> <td>연면적 30,000 제곱미터 이상</td> <td>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 책임감리원 : 1인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 (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p>※ 비 고 1. ~ 4. (현행과 같음) 5. ----- -----, 이 경우 보조감리원중 1인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p>	구분	규 모	감리원 배치기준	가.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책임감리원 1인을 포함한 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800세대이상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 책임감리원 : 1인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 (현행과 같음)	나. 건축물	연면적 10,000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0,000 제곱미터 미만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책임감리원 1인을 포함한 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연면적 30,000 제곱미터 이상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 책임감리원 : 1인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 (현행과 같음)
구분	규 모	감리원 배치기준																									
가.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800세대이상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 책임감리원 :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 (생 략)																									
나. 건축물	연면적 10,000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0,000 제곱미터 미만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연면적 30,000 제곱미터 이상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 책임감리원 :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 (생 략)																									
구분	규 모	감리원 배치기준																									
가.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책임감리원 1인을 포함한 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800세대이상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 책임감리원 : 1인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 (현행과 같음)																									
나. 건축물	연면적 10,000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0,000 제곱미터 미만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책임감리원 1인을 포함한 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연면적 30,000 제곱미터 이상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 책임감리원 : 1인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 (현행과 같음)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공중의 구분(제25조제4항관련) (이하 생략)</p>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공중의 구분(제25조제7항관련) (이하 현행과 같음)</p>																										